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8. 20 선고 2020가단15049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변론 종결 2020. 7. 16

판결 선고 2020. 8. 20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1,008,872원 및그 중 22,992,400원에 대하여 2018. 7. 1.부터 2020. 6. 12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22,992,400원에 대하여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부분

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로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 제1항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4. 7. 18. 망 E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과 사이에 망인의 F단체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대여 금반환의 지급보증을 위 하여 아래 와 같은 생활안정 자금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고, 당시 망인과 사이에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의 상환의무를 지체할경우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5. 10. 10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12. 31.까지는 연 15%의,그 다음날부터 2018. 6. 30.까지는 연 12%의, 그다음날부터는 연 9%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,보험계약자망인피보험자F 단체보험가입금액51,424,390원보험기간2014. 7.

182021. 8. 16.보증내용대여금반환지급보승

나. 이후 망인은 F단체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대여금의 반환의무를 지체하는 보험사 고가 발생하였고, 원고는 2015. 7. 10. F단체에게 보험금 45,984,800원을 지급하였다.

다. 망인은 2015 . 5. 18. 사망하였고,망인의 재산을 망인의 자녀들은 피고들이 각 1/2지분씩 상속받았다.

피고들은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201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였고,위 법원은 2015. 7. 17. 위 신청을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.

라.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약정에 따른 2018. 6. 30.자 기준으 로 한 원리금 채무는 62,017,745원(= 지급보험금 45,984,800원 + 2018. 6. 30.자 기준지연손해금 16,032,945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이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따르면,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

31,008,872원(= 위 62,017,745원 x 상속지분 1/2) 및 그 중 22,992,400원(= 위 45,984,800원、人 상속지분 1/2)에 대하여 2018. 7. 1.부터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2020. 6. 1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. 6. 12.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9%의,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,

판사 박강민